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0월 ○일 11:10분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외부도장 및 글씨도색작업을 실시 중에 피재자가 상가 2층 옥상 파라팻상에서 로울러(L=3.3m)를 이용하여 외부 벽체도장 작업을 하다가 인접한 약 1.3m떨어진 특고압선(22.9KV)에 피재자가 사용중인 로울러가 접촉감전된 후 8.5m아래 바다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충전전로에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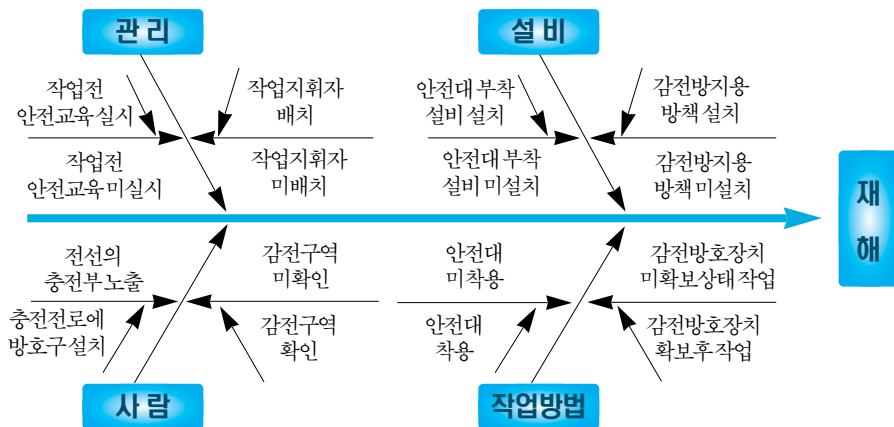
가. 충전전로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저
감전방지용 방책 또는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감시인 배치

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다. 개인보호구 사용 철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감 전 사 고 Ⅱ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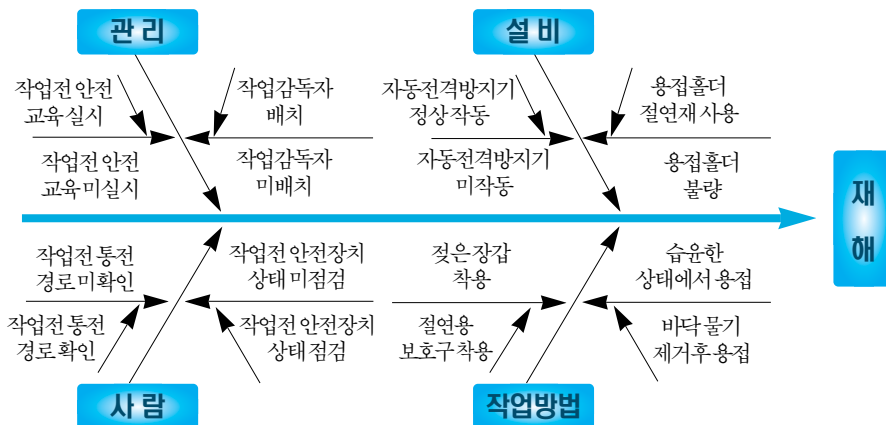
2003년 10월 ○일 11:10분경 경북 경주시 소재 ○ 인입통신구 공사시 작업발판설치작업을 수행하던 피재자가 젖은 장갑을 낀 상태로 작업예정 장소에 기 설치된 알루미늄 수직 사다리의 위(약 1.5m 높이)에 올라 교류아크 용접기의 홀더에 용접봉을 끼우려다가 무부하 전압에 감전되어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자동전격방지기 미작동
- 나. 용접시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다. 절연용보호구 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자동전격방지기 작동여부 확인 철저
 작업시작전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된 자동전격방지기가정상적으로작동되는지점검및확인철저

나. 용접시 안전작업 준수

-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등 습윤한 장소인 경우에는 물 등을 제거하거나 절연자재(베이크라이트, 고무, 플라스틱)를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신체의 모든 부분이 금속성 도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조치를 취한 후 작업토록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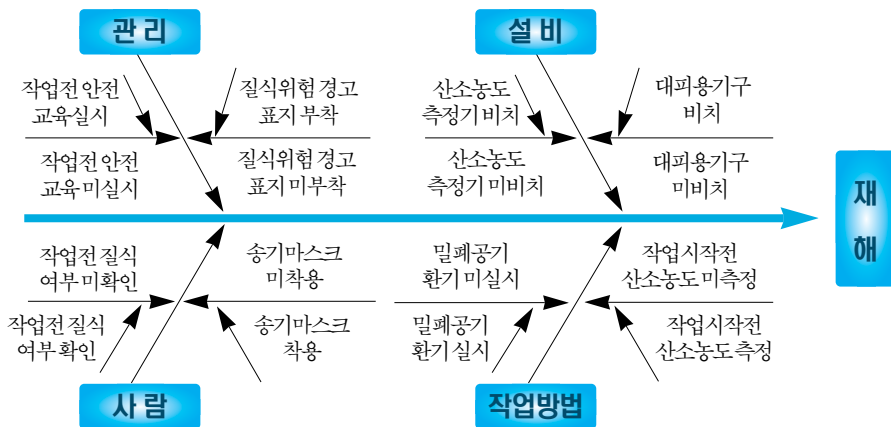
2003년 10월 0일 12:00분경 강릉시 소재 00환 경사업소 준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생활하수 유 입분배조에 들어가다가 유독가스가 잔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사다리로 올라오던 중 의식을 잃고 추 락하였고, 동료작업자 2명이 구조하러 맨홀내부에 들 어갔다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밀폐공간 작업전 점검 미 실시
- 나. 밀폐공간 작업장에 대한 환기 등 미 실시
- 다. 대피용 기구 미 비치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밀폐공간 작업전 점검 철저
 지하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전 적정 산소 농도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사전 점검 철저

나. 밀폐공간 환기 실시

맨홀내 작업시작전 및 작업중에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분배조에 기설치된 자연환기구에는 강제 환기팬을 설치하여 작업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설치)를 실시하여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여부 확인 후 작업자 출입

다. 대피용 기구 비치

밀폐공간 작업시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을 비치 하여 근로자 구출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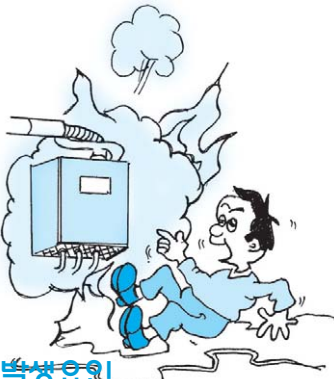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폭 발 사 고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9월 0일 13: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보일러를 점검하기 위해 보일러 덮개를 개방한 순간, 누출되어 있던 LPG와 공기의 혼합가스에 보일러 본체의 마찰, 충돌, 정전기 또는 보일러 점검시 점화용 불꽃등의 점화원이 제공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피재자는 화상을 입어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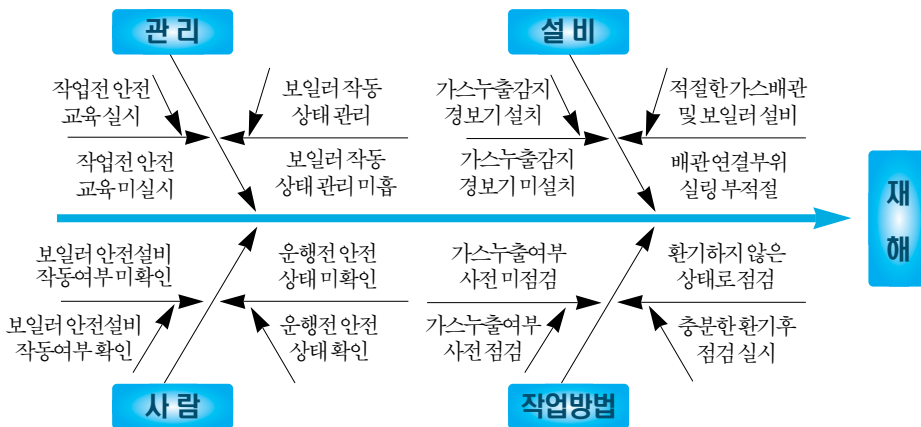


2. 재해발생요인

- 가. 가스배관 및 보일러 설비 불량
- 나. 작업방법 부적절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LPG 배관 및 보일러 가스누출 확인

LPG 등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구는 설비운전전 가스공급 배관 및 보일러의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여부를 조치한 후 운전 실시

나. 보일러 점검전 가스누출 여부 확인

보일러 점검전 가스누출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가스누출시 가스공급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여 가스를 차단한 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음 점검 실시

다. 가스누출 감지경보기 설치

보일러 연료용 가스(LPG)가 누출되었을 경우 공급 배관과 감지기를 연동되도록 설치하여 가스누출 감지시 초기에 즉시 가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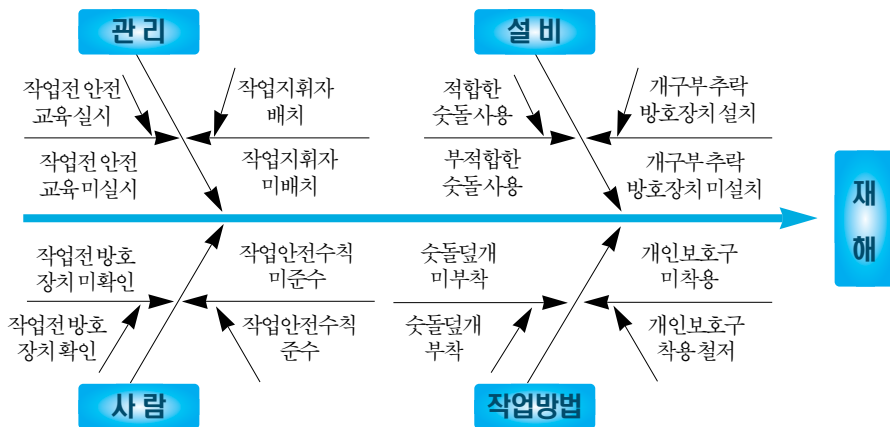
2003년 9월 ○일 09:30분경 경남 김해시 (주)○○ 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발코니 미장, 견출작업 중에 발코니의 천정과 벽체부분을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의 연삭숫돌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하여 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발코니 단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연삭숫돌 부적합
- 나. 연삭숫돌 덮개 미사용
- 다. 개구부 보호조치 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적합한 연삭숫돌 사용
연삭숫돌 구입시 최고사용 원주속도와 보유공구의 회전속도를 비교하여 안전한 숫돌 구입

나. 연삭숫돌 덮개 부착
회전중인 연삭숫돌(직경이 5cm 이상)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사용

다.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갱폼 최하단 작업발판과 아파트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발판 폭을 확대하거나 발코니 끝단에 안전간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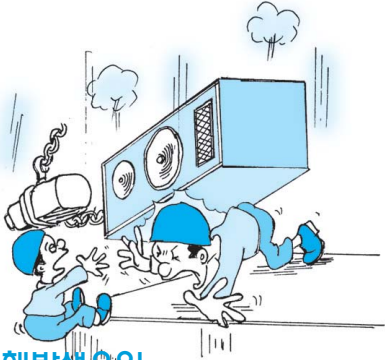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낙 아 사 고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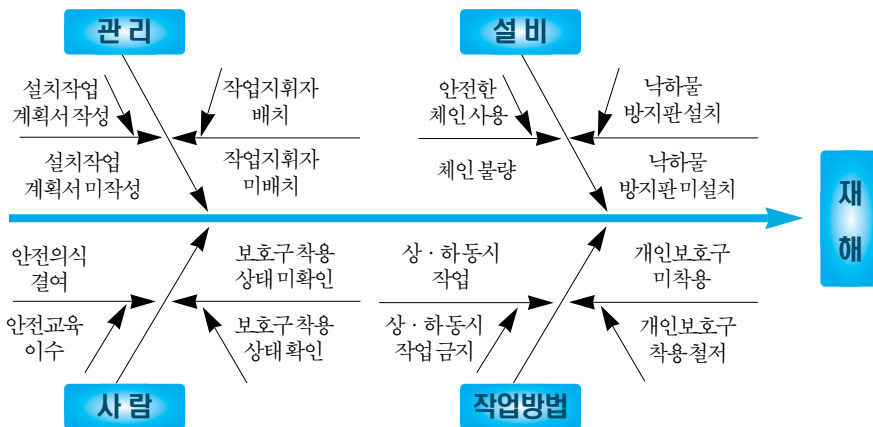
2003년 8월 ○일 02:00분경 서울시 중구 소재 ○○ 하우스 음향시스템 공사중 호이스트를 이용해 스피커를 들어올려 각도를 조절하던 중 천정과 호이스트를 연결하는 체인이 끊어지면서 스피커가 바닥으로 낙하하여 무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의 뒷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하고, 다른 피재자는 호이스트가 낙하하면서 어깨에 맞아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체인 불량
- 나. 상·하 동시 작업
- 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체인 사용
 매달린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체인 사용

나. 상·하 동시 작업금지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함.

다. 개인보호구 착용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